

순천대학교 학과진단에 관한 규정

제정 2017. 2. 23.

개정 2019. 9. 30.

개정 2020. 2. 27.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순천대학교 학과 또는 학부(전공)의 교육·연구역량 진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진단대상) ① 학과 또는 학부(전공)진단(이하 “학과진단”이라 한다)은 학칙 제7조의 학과 또는 학부(전공)(이하 “학과”라 한다)를 대상으로 한다. 다만, 학과진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진단대상을 추가 또는 제외할 수 있다.

② 학과가 신설·폐지·통합·분리 된 때에는 학과진단위원회 심의를 거쳐 진단 기준을 따로 정한다.

제3조(진단주기 및 시기) ① 학과진단은 매1년 주기로 실시하되, 대상기간은 진단 기준일부터 지난 1년간 (2개 학기)의 성과를 진단하며, 진단지표별로 따로 그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.

② 학과진단은 매 학년도 5월에 실시한다.

제4조(학과진단위원회) ① 학과진단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진단하기 위하여 학과진단위원회(이하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기획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교무처장, 학생처장, 단과대학장, 총장이 추천하는 2명, 교수회에서 추천하는 2명을 포함하여 1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(개정 2020. 2. 27.)

③ 위원 중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
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학과진단 관련 기본계획 수립 및 조정
2. 학과진단 결과의 분석, 활용 및 행·재정 지원
3. 학과진단 지표 및 진단방법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학과진단에 관한 사항

⑤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⑥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

위원장이 지명한다.

제5조(진단계획의 수립 및 공고) 총장은 매년 진단시행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학과에 통보하여야 한다.

제6조(진단방법) 학과진단을 위한 진단항목, 진단지표 및 배점 등 진단기준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.

제7조(진단절차 및 결과 확정) ① 각 부서장 및 학과에서는 일정에 따라 자료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위원회에서는 진단지표에 따라 진단자료를 작성하고 회의를 거쳐 진단결과를 최종 확정한다.

③ 위원회는 진단완료 후 진단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8조(진단결과 공지 및 활용) ① 진단결과는 학과에 통보하여야 한다.

② 진단결과에 따라 우수학과 선정 및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으며 이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.

③ 진단결과 등급이 2년 연속 하위등급인 학과에서는 운영상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, 총장이 필요한 경우 그 개선대책을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다.

④ 진단결과는 대학정책 및 운영에 활용할 수 있다.

제9조(기타사항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부 칙(2017. 2. 23.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7조제2항은 2018년도 학과평가부터 적용한다.

부 칙(2019. 9. 30.)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 (다른 규정의 개정) 『순천대학교 학사구조개편에 관한 규정』 제9조 제3호, 제10조 제3호와 같은 호 단서의 “학과평가”를 “학과진단”으로 개정한다.

③ (경과조치) 이 개정 규정 시행 이전에 실시한 “학과평가”는 이 규정에 의한 “학과진단”으로 본다.

부 칙<2020. 2. 27.> (순천대학교 학칙)

제1조(시행일) 이 학칙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규정의 폐지) (생략)

제3조(다른 규정의 개정)

①부터 ⑦까지 생략

⑧ 순천대학교 학과진단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 본문 중 “단과대학장(교양융합대학장 제외), 성과관리센터장”을 “단과대학장”으로 한다.